

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05년 3월 24일

나. 청 원 자 : 구미시 송정동 488-71번지 신화토건(주) 윤 경 복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29일

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정 성 기

나. 청원내용

- 인의동 58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복합민원으로 해당 부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,
-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보완지시 내용을 보면 법적인 사항을 충족하였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재 심의를 청원.

다. 주요내용

- 차량진출입구 2개소를 1개소로 통합 검토
- 주차면수를 세대당 1대 이상 확보 검토(법적으로는 0.7대 이상)
- 101동 주차장의 차량동선을 순환토록 검토
- 진입도로(2-299)폭 8m를 10m로 확장 검토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5,000m²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에 이익이 될 때에는 조건을 부여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는 정당하다고 사료됨.
- 하지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라도 법에서 규정한 세대당 0.7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과도하게 초과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사항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편의도 생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(별지)